

2003. 3. 28(금)
제88회임사회제4차본회의

심 사 보 고 서

-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-

총 무 사 회 위 원 회

- 인감증명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인감증명법 개정(2002. 3.21 법률 제6667호)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세부 사항의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대상을 정하는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코저

인감증명법제15조에 의한 수수료는 인감법시행령 제19조(수수료)규정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금액을 통일(통당 500원)하였으므로 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제천시제증명수수료등수수료요금표 가항 **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**하고 인감법시행령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.

나. 행정적 검토

- 인감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 시행되는 2003. 3. 26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내용을 전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“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